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20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구분	2
2.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 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구분

현행법은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유실동물’과 ‘유기동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4조~제37조, 제39조, 제49조,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13. (생략)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유실동물”이란 소유자 등이 실수나 사고로 잃어버린 동물로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의2. “유기동물”이란 소유자 등이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로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13.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u>유실·유기동물</u> 발생 예방 교육 8. 9. (생략) ④ ~ ⑦ (생략)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 ----- ----- ----- ----- ----- ----- ----- ----- ----- 1.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u>유실동물·유기동물</u>----- ----- 8.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⑧ (생략)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생략) 2. <u>유실·유기동물</u> ② ~ ④ (생략)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유실·유기동물</u>(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생략)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신고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유실동물 및 유기동물</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 -----. ----- ----- ----- ----- ----- ----- ----- -----. 1. <u>유실동물·유기동물</u>----- ----- 2. (현행과 같음)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u>유실·유기동물</u>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 10.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유실동물</u>. <u>유기동물</u>----- -----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실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실수나 사고로 잃어버린 동물이고 ‘유기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유실행위와 유기행위에 대한 정의의 명확성을 보

다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유실·유기동물 관련 규정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대상과 관계된 것으로,¹⁾ 동물의 구조·보호 시 해당 동물

1)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유실·유기동물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이 유실동물인지 유기동물인지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어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유실·유기동물’ 정의 규정은 구조·보호 등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를 구분할 실익이 적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2.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한정하여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83조, 제85조,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생산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u> <u>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u>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 ----- -----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9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u>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u>-----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 ----- ----- ----- ----- ----- ----- -----. 1.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u>허가 또는 갱신허가</u>----- -----

현행	개정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생략)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9.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 ----- -----허가 -----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³⁾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
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
로 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은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종이
므로 이들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는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2)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
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① 허가시 요구되는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② 특정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함(「법제기준과 실제」,
p.312 참조)

4) 예컨대, 2023년 4월 동물생산업 인력 기준(50마리당 1명)이 강화(시행규칙 별표10)되었으나,
2023년 6월 18일 이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2023년 6월 17일 이전 허가를 받은 기존 생
산업자는 최신 인력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
·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① 동물생산업, ② 동물수입업, ③ 동물판매업, ④ 동물장묘업으로, 이 중 동물수입업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과 유사하게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갱신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21	2023	2024
동물생산업	1,186	2,019	2,011	2,010
동물수입업	70	122	94	122
동물판매업	4,056	4,010	3,154	3,144

※ 자료: 동물복지실태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둘째, 영업허가 갱신제도를 운영할 때,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므로 허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허가의 유효기간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과건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과건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셋째, 허가 및 갱신허가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과 ② 유효기간이 있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의 승계한 자에 대한 유효기간의 적용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① 동물수입업도 영업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② 영업허가 갱신제도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과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행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며, ③ 허가의 갱신 여부 판정을 위한 현장 점검 시 해외사례⁵⁾와 같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지방자치단체는 ① 관련 영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전라남도)과 ② 영업허가 갱신제도 도입은 업무량 가중 및 영업자 민원 등을 고려할 때 과한 규제로 판단되나, 필요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경상남도)을 제시하였음.

한편, 동물생산자협회는 영업허가 갱신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현재 영업허가 관련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고령의 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반려동물협회는 현재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 규정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허가 갱신제도 도입 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영국 : 동물관련 영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동물관련 영업을 위한 개인 허가(라이센스)를 각기 취득해야 하며 매년 갱신. 신규 및 갱신 시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 실사관(수의사회 및 (지방)정부가 인정한 민간기관의 관련 자격 보유자로 한정)이 현장실사 실시 후 해당 보고서를 공무원이 검토하여 최종 결정

미국 : 동물 관련 영업자는 영업자가 지정한 수의사가 서명한 동물관리확인서와 함께 허가심사를 요청하며, 현장실사관(field inspector) 심사일정에 따라 4~6개월 소요됨. 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 동물, 인력 등 영업현황 제출 및 실사 후 허가 갱신

문 의 처
02)6788-5424